

##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

本 協議會의 設立根據과 機能強化를 主要骨子로 하는 「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」이 1984年 3月 제12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, 4月 10日 法律 第3727號로 공포되었다. 이로써 우리 나라 大學自律 伸張의 새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. 다음은 전문 22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本 協議會法을 전재한 것이다.

**第 1 條(目的)** 이 法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를 設立·育成하여 大學運營의 自主性을 높이고 公共性을 昂揚하며 大學의 相互協助를 통하여 大學教育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.

**第 2 條(設立)** ① 大學(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을 포함하되 大學校의 單科大學은 除外한다. 이하 같다)의 長은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韓國大學教育協議會(이하 “協議會”라 한다)를 設立한다.

② 協議會는 法人으로 한다.

③ 協議會가 設立된 때에는 大學의 長은 당연히 그 會員이 된다.

**第 3 條(機能)** ① 協議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.

1. 大學의 教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研究開發
2. 大學의 學生選拔制度에 관한 研究開發
3. 大學의 財政支援策 및 그 造成方案
4. 大學의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의 研究開發과 普及
5. 大學의 評價

6. 大學 教職員의 研修

7. 文敎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의 遂行

8. 기타 大學相互間의 協同에 관한 業務의 施行

② 協議會는 大學教育의 重要事項에 관하여 文敎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거나, 文敎部長官에게 建議할 수 있다.

**第 4 條(定款)** 協議會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.

1. 目的

2. 名稱

3.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

4.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

5. 總會와 理事會에 관한 事項

6. 事業에 관한 事項

7. 組織에 관한 事項

8.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

9. 會費에 관한 事項

10. 協議會의 決定事項에 대한 會員의 異議申請과 裁定에 관한 事項

11.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

**第 5 條(總會)** ① 協議會에 總會를 둔다. 總會는

會員으로 構成한다.

② 總會는 協議會의 最高議決機關으로 한다.

**第6條(任員)** ① 協議會에 任員으로서 會長 1人, 副會長 3人, 理事 10人 以上 20人 以內, 監事 2人을 둔다.

②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 다만 會長, 副會長은 除外한 任員이 그 任期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한다.

③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.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.

④ 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고 協議會의 業務를 總括하며,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.

⑤ 監사는 協議會의 會計 및 會計에 關聯된 業務를 監査한다.

**第7條(理事會)** ① 協議會에 理事會를 둔다. 理事會는 會長, 副會長과 理事로 構成한다.

② 理事會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協議會의 重要事項을 審議·議決한다.

③ 監사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.

**第8條(事務總長)** ① 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과 會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事務總長을 둔다.

② 事務總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하되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.

③ 事務總長은 理事를 兼任한다.

**第9條(經費補助 등)**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協議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.

② 個人·法人 또는 團體는 協議會의 施設 및 運營을 支援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.

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할 수 있다.

**第10條(國·公有財産의 貸付)**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償으로

貸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사용의 內容·條件 및 節次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**第11條(敎職員의 派遣勤務)** 協議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教育機關에 대하여 敎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.

**第12條(資料提供)** ① 協議會는 國家·公共機關·研究機關 등에서 發刊된 刊行物이나 資料 중에서 協議會運營과 관련이 있는 刊行物 또는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.

② 協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物이나 資料를 提供한 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에 相當하는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.

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에 提供된 刊行物이나 資料는 研究目的 外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**第13條(會計年度)** 協議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.

**第14條(事業計劃書 등)** 協議會는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20日 前에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第15條(決算報告)** 協議會는 每會計年度의 歲入·歲出決算書에 當該年度에 事業執行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會計年度 開始 후 2月 以內에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第16條(決定事項의 遵守義務)** 會員은 協議會의 總會나 理事會에서 決定된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.

**第17條(業務委託)** ① 文敎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大學의 行政 및 學事運營에 關한 所管業務의 一部를 協議會에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할 때에는 그 業務를 遂行하는 데 필요한 經費를 交付하여야 한다.

**第18條(大學評價)** ① 協議會는 大學教育과 大學行政의 發展을 위하여 그에 必要한 資料를 確保하고 週期的으로 大學의 學事 및 運營全般에 關한 評價를 實施하여야 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結果는 遲滯 없이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第19條(類似名稱의 使用禁止) 이 法에 의한 協議會가 아니면 韓國大學敎育協議會 또는 其의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.

第20條(民法의 準用) 協議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

第21條(過怠料)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第22條(施行令)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### 附 則

第1條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第2條(經過措置) ①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敎育協議會로 分다.

②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

議會에 속하는 모든 財産과 權利·義務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財産과 權利·義務로 보며, 그 財産과 權利·義務에 관한 登記簿 其他 公簿에 표시된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名義는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名義로 分다.

③ 이 法 施行 전에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행한 行爲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행한 行爲로,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대하여 행한 行爲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대하여 행한 行爲로 分다.

④ 이 法 施行 전에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補助金을 支給하였거나 支給하기로 한 것은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支給하였거나 支給하기로 한 것으로 分다.

⑤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任·職員은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任·職員으로 分다.

## 韓國大學敎育協議會 제 2 대 任員 名單

(無順)

職 位	姓 名	所屬大學 및 職位	職 位	姓 名	所屬大學 및 職位
會 長	張 忠 植	檀國大學校 總長	理 事	朴 泰 源	仁荷大學校 總長
副 會 長	金 明 會	清州大學校 總長	"	李 相 周	江原大學校 總長
"	趙 英 彬	全北大學校 總長	"	徐 明 源	忠南大學校 總長
"	李 寬 寬	蔚山工科大學 學長	"	鄭 樹 鳳	東亞大學校 總長
理 事	李 賢 宰	서울大學校 總長	"	支 平 孝	濟州大學校 總長
"	安 世 熙	延世大學校 總長	"	鄭 義 淑	梨花女子大學校 總長
"	金 俊 燁	高麗大學校 總長	"	郭 鍾 元	祥明女子大學 學長
"	徐 元 燮	慶北大學校 總長	"	金 玉 烈	淑明女子大學校 總長
"	吳 恒 基	全南大學校 總長	"	張 仁 淑	本 協議會 事務總長
"	徐 章 錫	서울敎育大學 學長	監 事	崔 載 勳	釜山大學校 總長
"	朴 奉 培	監理敎神學大學 學長	"	韓 萬 運	韓國航空大學 學長

\* 任員任期: 1984. 4. 8~1986. 4. 7 (2年間)

□ 主要 日誌 □

- 2.28 제13차 理事會 개최
- 2.29 제 5 차 總會 개최
  - 제 2 대 任員選出 및 기타 사항 협의
  - 회 장 : 張忠植 檀國大 總長
  - 부회장 : 金明會 淸州大 總長
  - 趙英彬 全北大 總長
  - 李 寬 蔚山工大 學長
- 3. 2 大學發展研究委員會 제 1 차 회의 개최
  - 委員會 運用 및 기타 업무 협의
- 3. 3 大學教育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 개최
  -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職業教育의 課題와 展望
- 3. 7 政策課題研究報告書 및 資料 배포(회원대학)
  - 國家發展에 대한 高等教育의 기여 외 2種
- 3.10 新任 會長團 회의 개최
- 3.12 본 협의회 法案內容 검토에 따른 公聽會(국회 문공위 소회의실, 법안심사소위원회 관계위원, 학계인사, 문교부 및 협의회 관계관 참석)
- 3.14 國會 文公委 小委員會에서 본 협의회 法案 통과
- 3.15 國會 法司委員會에서 본 협의회 法案 통과
- 3.16 國會 本會議에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 法案 통과
- 3.21 '83年度 大學評價結果報告書 제출(文敎部)
- 3.22 '84年度 大學評價企劃委員會 개최
- 3.29
  - 韓國大學教育協會法 國務會議 審議
  - 大學評價企劃委員會 개최
  - 政策課題 최종 보고서 제출(文敎部)
    - 國家發展에 대한 高等教育의 기여
    - 大學間 協力體制에 관한 研究
    - 研究結果報告書 배포(회원대학)
    - 韓國大學教育의 理念과 方向定立에 관한 研究 外 2種
- 3.31 제 6 차 IBRD 차관사업에 대한 評價業務를 위한 간담회 개최
- 4. 7 본 협의회 제 2 대 任員 承認(文敎部)
- 4.10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 公布(法律 제 3727호)
- 4.12
  - 大學經營實務者 研修 실시 계획을 위한 회의 개최
  - 大學評價企劃委員會 개최
  -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 배포(회원대학 및 각종 학교)
  - 본 협의회 제 2 대 任員 名單 통보(회원대학)
- 4.13
  - 政策課題회의 개최
    - 대학 학점 단위당 登錄金制度에 관한 研究
  - AASCU 와의 國際세미나 준비위원회 제 3 차 회의 개최
- 4.28 본 협의회 제14차 理事會 개최